

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문

유망한 수산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『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』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12월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1.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수산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패키지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

□ 지원규모

구 분	초보바우처	성장바우처	고도화바우처
지원업체	10개소 내외	15개소 내외	8개소 내외
지원자격	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~1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원 이상	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만불 이상	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
지원금액	50백만원	50~100백만원 * 업체별 자율 설정	150~270백만원 * 업체별 자율 설정
지원비율	최종 지원한도 이내, 총 사업비의 80%(중소기업), 70%(중견기업)		
지원기간	최대 3년	최대 3년	최대 5년
	-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- 사업 추진기간 : 협약일 ~ `22.11.30 * 정산 신청은 12.5까지		

- * '21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, 신규 선정업체수는 변동 가능
- * 중소/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,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,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
- *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

유의사항

- 총 사업비 내, 정부출연금(국비)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
-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(VAT) 미포함, 부가가치세(VAT)는 참가기업 부담
- 최종 선정자는 총괄계획서 외 메뉴별 계획서 제출·승인 후 사업 추진
- 배정예산은 7~8월경 중간점검을 통해 상반기 집행,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, 가용예산 발생 시 차순위 예비사업자에 배정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절차



○ 지원내용(사업메뉴판)

단계	사업메뉴	주요 지원 내용
① 수출 준비	해외시장조사	■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,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, 해외조사 유료조사 보고서 구입 등
	수출실무 교육	■ 무역실무, 제품개발, 상품화,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
	포장디자인 개발	■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■ 포장 동판, 금형제작(5백만원 한도)
	수출관련 검사비	■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(용수검사 포함)
	지적재산권 출원	■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의 해외 출원
	국제인증 취득	■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
	통번역 및 서류대행	■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·통관·계약·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
	샘플통관운송비	■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·운송료 지원
	코로나 자금	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위생, 방역비용 및 수출 항만운임비 지원 (배정액의 10%한도)
② 해외 진출	수출용 브랜드 개발	■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(BI, CI 제작 등)
	유통업체 판촉	■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
	온라인 판촉	■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
	해외 마켓테스트	■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(시음시식) 홍보 및 마켓테스트
	박람회 및 바이어상담	■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비용 등
③ 경쟁력 강화	유망상품화	■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, 전문가 자문비 등
	홍보물 제작	■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, 유명IP 라이선스 비용
	미디어 홍보	■ 해외 매스미디어,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(SNS 포함)

* 단계별,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

○ 바우처 메뉴별 예산집행 한도

구분	초보바우처	성장바우처	고도화바우처
한도	① 수출준비단계 - 포장디자인 개발(2천)	① 수출준비단계 - 포장디자인 개발(3천)	① 수출준비단계 - 포장디자인 개발(3천)
	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	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 - 홍보물 제작(3천) - 미디어 홍보(3천)	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 - 홍보물 제작(4천) - 미디어 홍보(4천)
	총 5천만원	총 5천~1억	총 1억5천~2억7천
의무 사항	(공통) 수출컨설팅(aT제공) 추진 의무		
	• <수출실무교육> 의무	• <유망상품화(신제품개발)> 의무	• <유망상품화(신제품개발)> 의무 • 해외진출, 경쟁력 강화 메뉴에 50% 이상 추진 의무

* 특정 1개 메뉴에 배정 예산의 50%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, 단계·메뉴별 예산 한도는 중간점검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조정 추진

예시) 성장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이 배정예산 1억 중 6천만원을 <수출관련 검사비> 한 항목에 사용할 수 없음

* 의무추진항목 착수 및 진척도는 '22년 연속사업자 평가 시 반영

* 판촉사업(유통업체 및 온라인판촉) 선택 시 국고 지원금액의 200%이상 금액 수출(입) 의무 (정산 시 의무액 대비 정산감액 예정)

* 협약 체결 후 사업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사업 참가 제한

*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, 세부 정산기준은 별첨

□ 운영기관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수산수출부

2.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- 휴·폐업 기업
 -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/기업
 - * 단,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 - 대기업(평가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)
 -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산업부(KOTRA), 중기부, 특허청 등 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(중복지원 방지)
 - '20년, '21년 aT 수산물 바우처 사업 포기 및 미정산 업체
- ※ 해양수산부 유사사업간 중복 선정 불가(aT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, 수협 유망상품화)하며, <수산 전문조직 육성>, <개별박람회> 사업 참가업체는 **개별업체로 지원 시** 바우처 사업 신청 가능하나, 선정 이후 각 사업 간 유사항목 중복정산 금지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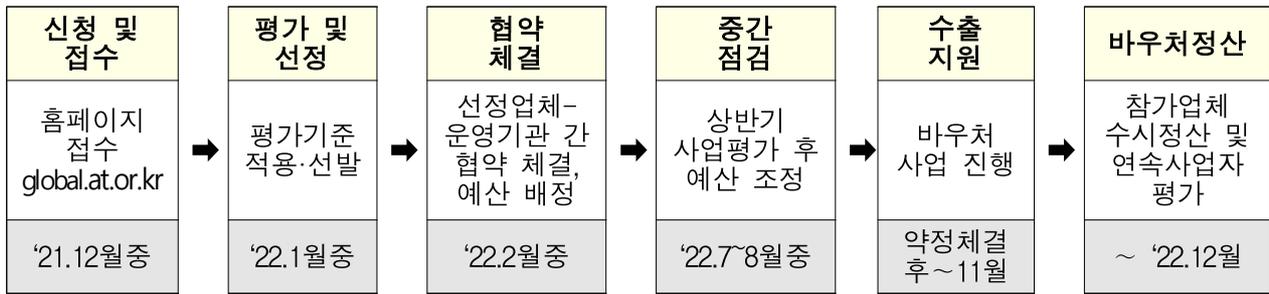
-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 온라인 신청
 -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 필요) → 상단메뉴 [수출지원사업신청] →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→ 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공고 내 [사업신청] 버튼 클릭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 - * 온라인 접수 원칙(우편 접수, 쿠팡, 택배, 방문 접수 불가)

□ 신청기간 : '21. 12. 17 ~ '22. 1. 16

□ 신청서류

- ① (필수) 사업 참가신청서 (작성양식 제공)
- ② (필수) 사업 참가계획서 및 인지확인서(작성양식 제공)
- ③ (필수)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(* 조합 등은 생략 가능)
- ④ (필수)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: **감사보고서,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**
(*초보바우처 신청업체는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제출)
- ⑤ (필수)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반서류(온라인 or 오프라인/기 제출업체 생략가능)
- ⑥ (선택)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증빙(해당기업)
- ⑥ (선택)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(해당기업)

□ 지원절차



*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4. 심사 및 결과발표

□ 심사방법 및 항목

- (1차) 서류심사(계량/40점) : 참가신청서, 증빙서류 검토 **3배수**

항목	평가내용	배점
수출경쟁력	○ 수산물 수출금액 * 최근 3개년('19~'21년) 평균	15
	○ 수출금액 증가율(%) * 최근 3개년 평균	10
재무건전성	○ 자기자본비율(%)	10
제품역량	○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	5
계 (* 가점 적용 시 최대 44점)		40

인증 및 특허 예시

(국내) ISO, HACCP, GMP, 유기수산물인증, 품질인증

(해외) 미FDA, FSSC22000, HALAL(JAKIM, MUI, MUIS, IFANCA 등), 러시아 GOST, 유라시아경제연합EAC(혹은 러시아CU), KOSHER, SQF2000, IFS, BRC, 중국보건식품, Global-GAP, 일본 AS, 미국 USDA Organic 유기농 인증 등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용 인증

- 가점사항(최대 4점)

가점	세부사항
1개당 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·단체 · K.FISH 브랜드 제품 업체(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) ·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(최근 3년간, '19~'21) ·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(최근 3년간, '19~'21) ·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·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·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·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('21. 추경) 고용 유지 업체(재직증명서 제출)
1개당 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적기업·여성기업·장애인기업 등

* 가점1 내 세부사항 중복 인정 불가

○ (2차) 비계량평가(60점) : 참가계획서, 업체별 PT(20분 내외)

* 1차 계량평가 결과 상위업체(3배수)에 한해 대면 오프라인 평가회 진행

항목	평가내용	배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○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○ 중장기(3~5년) 계획수립 적절성 	15
제품경쟁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(개발상품 시장경쟁력 포함) ○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○ 목표국 시장적합성 	15
수출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시장 수출 경력 ○ 전담인력,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	10
성과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목표 도전성,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	10
정책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품목의 국산원료 사용, HMR제품 개발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 	10

* 사업계획 적정성, 제품경쟁력, 수출역량, 성과목표의 적정성, 정책부합성 등 종합평가

** 평가위원회는 수산식품 수출분야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, 코로나19 지속 시 평가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

□ 선정발표 :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

6. 문의처

- 담당부서 : aT 농수산사업처 수산수출부
 - 연락처 : 061-931-0854 / 이메일 : lsysl@at.or.kr

7. 선정 관련 기타 유의사항

-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,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관련 소요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,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함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